##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1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정운천·최형두·권명호

윤창현 • 이철규 • 이종성

김형동 • 서정숙 • 김선교

안병길 · 홍문표 · 추경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소비심리 감소, 판매행사(지역축제 등) 취소 등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

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9조의3).

법률 제 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일"을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의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 ③ (생 략)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4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	
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	
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5
신고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	<u>30</u> 일(변경신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u>고의 경우에는 10일)</u>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
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업) 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